

part 4.

면세분 전자계산서 제도 이해

1. 전자계산서 제도 / 60
2.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 61
3. 전자계산서 발급과 전송기한 / 62
4. 전자계산서 혜택과 가산세 / 63
5.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 66
6. 부가가치세법 관련 법령 준용 / 70



조회/발급



증명발급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인



연말정산간소화
소득공제자료 조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전자고지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소득금액증명
발급



설정

1. 전자계산서 제도

■ 도입배경

- 2013.4.1.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을 도입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으나, 전자계산서 발급과 전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업자 선택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음
- 2015.7.1. 이후 거래분부터는 사업자의 「발급여건, 납세편의, 면세거래의 거래투명성 효과」 등을 감안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음

■ 추진배경

① 납세협력비용 절감

- 종이 계산서 발급 · 송달 · 보관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절감 및 회계처리 편리성 제고
- ▶ 세금계산서는 전자적으로 발급하고, 계산서는 종이로 발급하는데 따르는 불편 해소

②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비해 면세거래의 세원투명성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계산서도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토록 함
- ▶ 무자료 거래 및 소급발급 관행 등을 사전에 차단

③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미 구축

- 2013.4월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그간 발급의무 사항은 아니었지만 많은 사업자가 전자발급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와 발급 · 전송절차가 동일

2.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 의무발급 대상자(所法 제163조①, 法法 제121조①)

- 2015.7.1.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2016.1.1.부터는 직전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계산서도 전자적으로 의무 발급해야 함

발급의무 개시일	대상 사업자
2015.7.1.	▶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계산서도 전자발급 의무
2016.1.1.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에 대응되는 총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임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위탁 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 ▶ 전자계산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발급해야 함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은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구분	총수입 금액	과세 공급가액	면세분 수입금액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사례1	11억원	2억원	9억원	발급의무○(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
사례2	10억원	-	10억원	발급의무○(면세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
사례3	9억원	4억원	5억원	발급의무○(과세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
사례4	9억원	1억원	8억원	발급의무×(과세 공급가액 3억원 미만 & 총수입금액 10억원 미만)

* 사례4의 경우 법령상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어도 전자계산서 발급 가능

3. 전자계산서 발급과 전송기한

■ 전자계산서(所則 제96조의3)

-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발급·전송되어야 함

■ 전자계산서 발급시기(所令 제211조⑪, 法令 제164조①)

-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공급 받는자가 그 전자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봄
- 공급받는 자가 전자계산서를 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 전자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봄

■ 전자계산서 발급기한(所令 제212조②, 法令 제164조①)

- 원칙적으로 계산서도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공급시기)의 시기에 발급
- 다만, 월합계 계산서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 발급기한(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 전자계산서 전송기한(所令 제211조⑨, 法令 제164조⑤)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所令 제211조⑩)

1.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 5. 기타 참고사항

4. 전자계산서 혜택과 가산세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시 혜택

- ① **(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 발급 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 법인 제외)의 발급세액 공제(所法 제56조의3, 所令 제116조의4)
* 15.1.1. 거래분부터 적용하며 18.12.31.까지 적용함
- ② **(지출증명 보관 의무 면제)**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증명서류 보관 의무 면제(所令 제208의2⑤, 法令 제158조⑤)
- ③ **(신고간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所法 제163조⑤, 法令 제121조⑤)

■ 전자계산서 가산세

-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구 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사실과 다름 ▶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1%	1%
	미발급 ▶ 과세기간 내에 계산서 미발급	2%	-
	허위등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공급받지) 하지 않고 계산서 발급(발급받음)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발급받음)	2%	2%
	종이 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	1% ('16년 이후)	
전송	지연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예) 2015.7.6. 발급한 경우, 2015.7.7.~2016.1.11.까지 전송	* 연도별·사업자별로 다름	-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 예) 2015.7.6. 발급한 경우 2016.1.11.까지 미전송		

- *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함
- * 과세기간내 발급: 1월~11월 거래분은 12.31, 12월 거래분은 특례규정에 의해 1.10.까지 발급
- * 가산세 부과한도: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15.7.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 ▶ 종이발급, 지연(미)전송에 대한 가산세는 발급의무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부터 아래 가산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

〈발급의무 위반별 연도별 가산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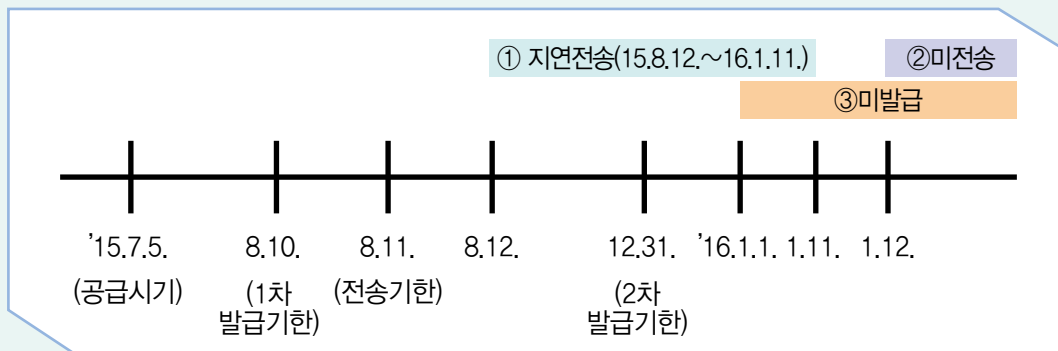
구 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	2016	2017	2018	2019
종이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1%	1%	1%	1%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1%	1%	1%
지연전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0.1%	0.5%	0.5%	0.5%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0.1%	0.1%	0.5%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0.3%	1%	1%	1%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0.3%	0.3%	1%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적용시기〉

- (2015.7.1.~)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2016.1.1.~)직전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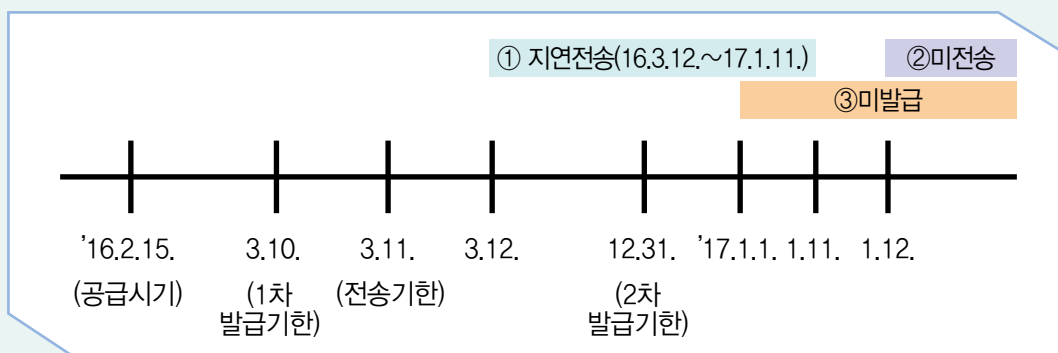
■ 가산세 사례별 검토

사례1 '15.7.1.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15.7.5.이 부가가치세 면세거래 재화 공급시기인 경우



- ▶ 전자계산서 지연전송(①), 미전송(②)에 대한 가산세는 '16.1.1.이후 재화·용역 공급 분부터 부과하므로 →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
- ▶ 다만, 과세기간('15.12.31.) 내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2%)
- *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조항 없음

사례2 '15.7.1.부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16.2.15.이 부가가치세 면세거래 재화 공급시기인 경우



- ▶ 전자계산서 지연전송(①) 가산세 0.1%, 미전송(②) 가산세 0.3% 부과
- ▶ 과세기간('16.12.31.) 내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므로 →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2%)
- *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되는 경우 미(지연)전송 가산세 부과 제외

5.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 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所法 제163조⑤, 法法 제121조⑤)

-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다음 기한 내에 제출 의무
- ▶ 개인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10.
- ▶ 법인사업자: 매년 2.10.
- 다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거나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합계표 제출 생략

■ 계산서합계표 작성방법

- 전자계산서와 종이계산서를 구분하여 작성
-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발급분(발급받은분)란에는 「매출처(매입처)수, 매수, 매출(매입) 합계금액」을 기재하고 매출처별(매입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
-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 ▶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 분(발급받은 분)란”에는 종이로 발급한(발급받은) 계산서, 전자적으로 발급하였으나 그 개별명세를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매입처)수, 매수, 매출(매입) 합계금액」을 기재하고 매출(매입)처별 명세 작성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 내역을 확인하고 작성
- ▶ 전자적으로 발급한 계산서 일지라도 발급자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거나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2일 이후 전송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후 신고
- * 경로: 【홈택스】→【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및 통계조회】

■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 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 부과

구 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다음연도 2.10.까지 미제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	1%
	지연 제출	▶ 상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2.10.)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0.5%	0.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 「사업장현황 신고대상 개인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법인」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연도 2.10.까지 미제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1%
	지연 제출	▶ 상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2.10.)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	0.5%

*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함

* 가산세 부과한도: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로 부과, 고의적 의무위반은 가산세 한도 없음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 요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1)] <개정 2013.2.23>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갑) (년 기)

(앞쪽)

1. 제출자 인적사항

(1) 사업자등록번호	- -	(2) 상호(법인명)	
(3) 성 명(대 표 자)		(4) 사업장	
(5) 거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6) 작성일	

2. 매출계산서 총합계

구 분		(7) 매출 처수	(8) 매수	(9) 매 출 (수 입) 금 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합 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 계산서 발급분	사업자등록 번호 발급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계산서 금액을 기재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소 계							
위 전자 계산서 외의 발급분	사업자등록 번호 발급분	종이계산서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계산서 금액을 기재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소 계							

매수, 금액 등은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기재

매수, 금액 등은 3번
명세를 집계하여 기재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 (합계금액으로 적음)

(10) 번호	(11) 사업자 등록번호	(12) 상 호 (법인명)	(13) 매수	(14) 매 출 (수 입) 금 액					비고
				조	십억	백만	천	일	
1									
2									
3									
4									
5									

오류가 발생할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기재

() 쪽

(15) 관리번호(매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 요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2)] <개정 2013.2.23>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갑) (년 기)

(앞쪽)

1. 제출자 인적사항

(1) 사업자등록번호	- -	(2) 상호(법인명)	
(3) 성명(대표자)		(4) 사업장소재지	
(5) 거래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6) 작성일자	년 월 일

2. 매입계산서 총합계

구분	(7) 매입처수	(8) 매수	(9) 매입금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합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발급받은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계산서 금액을 기재			매수, 금액 등은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기재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		종이계산서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계산서 금액을 기재			매수, 금액 등은 3번 명세를 집계하여 기재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 (합계금액으로 적음)

(10) 번호	(11) 사업자등록번호	(12) 상호(법인명)	(13) 매수	(14) 매입금액				비고
				조	십억	백만	천 일	
1								
2								
3								
4								
5								

() 쪽

(15) 관리번호(매입)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6. 부가가치세법 관련 법령 준용

■ 계산서의 작성·교부, 계산서합계표 제출

-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은 아래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을 준용(所令 제212조②, 法令 제164조①)

관련 법령		주요 내용
부가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기재사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건별, 월합계 발급 등)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부가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제97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제98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99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 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 등

- 아래 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를 준용하고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계산서로 봄(所令 제211조⑪, 法令 제164조①)
- ▶ 전자계산서 발급방법(ERP 및 ASP시스템, 국세청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이용한 발급)
- ▶ 전자계산서 발급시기, 발급기한,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 ▶ 전자계산서 검용서식 사용사업자(적용대상 및 방법, 등록절차)
- ▶ 전자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제출서류, 등록취소 사유 등